

의안번호	2213472
의 퇴 인	이성권의원
회 답 일	2025. 10. 13.
추 계 번호	25F5490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－ 어업 및 농업 분야 지방세특례 적용기한 4년 연장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어업 및 농업 분야의 지방세특례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4년 연장할 경우, 지방세는 2026년 234.6억원, 2030년 303.1억원 등 2026년에서 2030년까지 5년간 총 2,105.8억원(연평균 421.2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- 소형어선에 취득세 등 면제 연장: 4년간 95.3억원(연평균 23.8억원) 감소
 - 어업권·양식업권 취득세 등 면제 연장: 4년간 1.6억원(연평균 0.4억원) 감소
 - 농어업인 용자담보물 등기의 등록면허세 감면 연장: 4년간 833.6억원(연평균 208.4억원) 감소
 - 조합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연장: 4년간 1,175.3억원(연평균 293.8억원) 감소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지방세, 2026~2030년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누적	연평균
소형어선에 대한 취득세 등 면제 적용기한 연장 (안 제9조제2항)	-25.8	-24.4	-23.1	-22.0		-95.3	-23.8
어업권·양식업권의 취득세 등 면제 적용기한 연장 (안 제9조제3항)	-0.4	-0.4	-0.4	-0.4		-1.6	-0.4
농어업인 용자담보물 등기의 등록면허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(안 제10조제1항)	-208.4	-208.4	-208.4	-208.4		-833.6	-208.4
조합법인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(안 제167조)		-284.7	-290.7	-296.8	-303.1	-1,175.3	-293.8
합 계	-234.6	-517.9	-522.6	-527.6	-303.1	-2,105.8	-421.2

주: 소수점 반올림으로 일부 합계가 맞지 않을 수 있음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9조제2항 (20톤 미만 소형어선에 대한 지방세 면제)	○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한 취득세, 재산세 및 지역자원 시설세 면제의 적용기한 4년 연장 - 적용기한: (현행) 2025.12.31. → (개정안) 2029.12.31.	

2	안 제9조제3항 (출원 취득 및 등록에 의한 어업권·양식업권에 대한 지방세 면제)	- 어업권·양식업권 출원 취득의 취득세 및 등록에 관한 등록면허세 면제의 적용기한 4년 연장 - 적용기한: (현행) 2025.12.31. → (개정안) 2029.12.31.	
3	안 제10조제1항 (농어업인 용자담보물 등기의 등록면허세 감면)	- 농어업인(영농조합법인, 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포함) 용자담보물 등기의 등록면허세 감면 적용기한 4년 연장 - 적용기한: (현행) 2025.12.31. → (개정안) 2029.12.31.	
4	안 제167조 (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)	-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4년 연장 - 적용기한: (현행) 2025.12.31. → (개정안) 2029.12.31.	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 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9조제2항 (20톤 미만 소형어선에 대한 지방세 면제)	○	-
2	안 제9조제3항 (출원 취득 및 등록에 의한 어업권·양식업권에 대한 지방세 면제)	○	-
3	안 제10조제1항 (농어업인 용자담보물 등기의 등록면허세 감면)	○	-
4	안 제167조 (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)	○	-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□ 개정안 부칙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감면의 세수효과가 2026년부터 2029년까지 발생한다고 가정

○ 단, 개정안에 따른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(제167조)의 경우 징수기준을 적용하여 세수효과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발생

□ (안 제9조제2항) 자영어민이 취득한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한 취득세 등 면제 적용기한 연장의 세수효과는 다음과 같은 가정하에 추계

○ (취득세) 최근 5년간 감면실적이 감소하는 추세이므로, 2023년 감면실적을 바탕으로 향후 2019~2023년 감면액의 연평균 증감률에 따라 매년 감면

액이 변화한다고 가정

－ 최근 5년간 취득세 감면액의 연평균 증감률: -8.4%

- (재산세) 최근 5년간 소형어선에 대한 재산세 감면실적의 증감추이가 일정하지 않으므로, 최근 5년간 연평균 재산세 감면액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

－ 최근 5년간 연평균 재산세 감면액: 8.0억원

- (지역자원시설세) 최근 5년간 소형어선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실적의 증감추이가 일정하지 않으므로, 최근 5년간 연평균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액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

－ 최근 5년간 연평균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액: 1.1억원

□ (안 제9조제3항) 어업권·양식업권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의 세수효과는 다음과 같은 가정하에 추계

- (취득세) 2019, 2020년은 감면실적이 없으며 최근 3년(2021~2023년)간 감면실적의 증감추이가 일정하지 않으므로 최근 3년간 연평균 감면액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

－ 최근 3년간 연평균 취득세 감면액: 0.3억원

- (등록면허세) 최근 5년(2019~2023년)간 감면액이 0.1억원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으므로, 최근 5년간 연평균 감면액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

－ 최근 5년간 연평균 등록면허세 감면액: 0.1억원

□ (안 제10조제1항) 농어업인 용자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의 세수효과는 다음과 같은 가정하에 추계

- 최근 5년(2019~2023)간 감면액이 등락하며 안정된 추이를 보이지 않으므로, 최근 5년간 연평균 감면실적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

－ 최근 5년간 연평균 등록면허세 감면실적: 208.4억원

□ (안 제167조) 향후 과표구간별 조합법인의 분포는 2024년 수준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며, 조합법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최근 5년간의 감면실적의 증가추세가 유지된다고 가정

- 조합법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조합법인 과세특례를 적용한 경우와 일반법인의 법인세율 체계를 적용한 경우의 산출세액 차이를 기준으로 산출

- 조세지출예산서상 실적을 추계에 활용하되, 2024년 이전 감면실적은 2022년 세법개정에 따른 일반법인의 세율 인하를 반영해 조정한 후 활용
- 조정된 과세특례의 실적을 바탕으로 최근 5년('20~'24년)간의 실적 증가 추세가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
 - 최근 5년 연평균 실적 증가율: 2.1%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20톤 미만 소형어선에 대한 취득세·재산세 등 감면(안 제9조제2항)

(1) 제도개요 및 추계방법

- (제도개요) 자영업민이 취득한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해서는 취득세·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
 - 적용기한: (현행) 2025년 12월 31일 → (개정안) 2029년 12월 31일
- (추계방법) 자영업민이 취득한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한 취득세 등의 면제 적용기한 연장의 세수효과는 다음과 같은 가정하에 추계
 - (취득세) 최근 5년간 소형어선에 대한 취득세 감면실적은 2019년 30.8억 원에서 2023년 21.7억원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므로, 2023년 감면실적을 바탕으로 향후 2019~2023년 감면액의 연평균 증감률에 따라 매년 감면액이 변화한다고 가정하여 추계
 - 최근 5년간 취득세 감면액의 연평균 증감률: -8.4%
 - (재산세) 최근 5년간 소형어선에 대한 재산세 감면실적의 증감추이가 일정하지 않으므로, 최근 5년간 연평균 재산세 감면액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
 - 최근 5년간 연평균 재산세 감면액: 8.0억원
 - (지역자원시설세) 최근 5년간 소형어선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실적의 증감추이가 일정하지 않으므로, 최근 5년간 연평균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액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
 - 최근 5년간 연평균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액: 1.1억원

[표 2] 자영어민이 취득한 소형어선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실적 추이: 2019~2023년
(단위: 억원)

	2019	2020	2021	2022	2023
취득세	30.8	29.5	27.0	27.4	21.7
재산세	7.1	8.4	8.3	7.9	8.2
지역자원시설세	1.0	1.2	1.2	1.1	1.2

자료: 행정안전부, 「지방세통계연감」, 각 연도

(2) 추계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자영어민이 취득한 소형어선에 대한 취득세·재산세·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4년 연장할 경우, 지방세는 2026년 25.8억원, 2029년 22.0억원 등 2026년에서 2029년까지 4년간 총 95.3억원(연평균 23.8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3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2026~2029년, 지방세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2029	누적	연평균
20톤 미만 소형어선에 대한 취득세 등 면제 적용기한 연장(안 제9조제2항)	-25.8	-24.4	-23.1	-22.0	-95.3	-23.8
- 취득세	-16.7	-15.3	-14.0	-12.8	-58.8	-14.7
- 재산세	-8.0	-8.0	-8.0	-8.0	-31.9	-8.0
- 지역자원시설세	-1.1	-1.1	-1.1	-1.1	-4.6	-1.1

주: 소수점 반올림으로 일부 합계가 맞지 않을 수 있음

나. 어업권·양식업권 등 출원취득의 취득세 등 면제(안 제9조제3항)

(1) 제도개요 및 추계방법

- (제도개요) 출원에 의해 취득한 어업권·양식업권의 취득세와 어업권·양식업권 면허를 새로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하는 경우의 등록면허세를 면제
 - 적용기한: (현행) 2025년 12월 31일 → (개정안) 2029년 12월 31일

□ (추계방법) 어업권·양식업권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의 세수효과는 다음과 같은 가정하에 추계

- (취득세) 2019, 2020년은 감면실적이 없으며 최근 3년(2021~2023년)간 감면실적의 증감추이가 일정하지 않으므로, 최근 3년간 연평균 감면액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
 - 최근 3년간 연평균 취득세 감면액: 0.3억원
- (등록면허세) 최근 5년(2019~2023년)간 감면액이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으므로, 최근 5년간 연평균 감면액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
 - 최근 5년간 연평균 등록면허세 감면액: 0.1억원

[표 4] 어업권·양식업권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실적 추이: 2019~2023년

(단위: 억원)

	2019	2020	2021	2022	2023
취득세	0	0	0.2	0.6	0.2
등록면허세	0.1	0.1	0.1	0.1	0.1

자료: 행정안전부, 「지방세통계연감」, 각 연도

(2) 추계결과

□ 개정안에 따라 어업권·양식업권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4년 연장할 경우, 지방세는 2026년 0.4억원, 2029년 0.4억원 등 2026년에서 2029년까지 4년간 총 1.6억원(연평균 0.4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5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2026~2029년, 지방세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2029	누적	연평균
어업권양식업권의 취득세 등 면제 적용기한 연장(안 제9조제3항)	-0.4	-0.4	-0.4	-0.4	-1.6	-0.4
- 취득세	-0.3	-0.3	-0.3	-0.3	-1.2	-0.3
- 등록면허세	-0.1	-0.1	-0.1	-0.1	-0.4	-0.1

다. 농어업인 등 용자 관련 등록면허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(안 제10조제1항)

(1) 제도개요 및 추계방법

- (제도개요) 상호금융기관의 농어업인 용자 시의 용자담보물 등기(20톤 미만 소형어선에 대한 담보물 등록 포함)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
 - 감면액: 등록면허세의 50%
 - 적용기한: (현행) 2025년 12월 31일 → (개정안) 2029년 12월 31일
- (추계방법) 2019년 236.3억원에서 2021년 260.3억원까지 증가, 이후 2023년 130.2억원까지 감소하여 증감추이가 일정하지 않아 최근 5년 연평균 감면실적이 향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
 - 최근 5년(2019~2023년)간 연평균 감면실적: 208.4억원

[표 6] 농어업인 용자담보물 등기의 등록면허세 감면실적 추이: 2019~2023년

(단위: 억원)

구 분	2019	2020	2021	2022	2023
감면실적	236.3	252.4	260.3	162.9	130.2

자료: 행정안전부, 「지방세통계연감」, 각 년도

(2) 추계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농어업인 용자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적용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4년 연장할 경우, 등록면허세는 2026년 208.4억원, 2029년 208.4억원 등 2026년에서 2029년까지 총 833.6억원(연평균 208.4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7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2026~2029년, 등록면허세

(단위: 억원)

구 분	2026	2027	2028	2029	누적	연평균
농어업인 용자담보물 등기의 등록면허세 감면 적용기한 4년 연장(안 제10조제1항)	-208.4	-208.4	-208.4	-208.4	-833.6	-208.4

라.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(안 제167조)

(1) 제도개요 및 감면실적

□ (제도개요) 농업협동조합·수산업협동조합 등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시 일반법인과 달리 당기순이익 과세를 적용하여 세무조정을 간소화하고, 저율과세를 적용하는 특례

- 일반법인과 달리 조합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산출시 당기순이익에서 기부금, 접대비 등 8가지 항목만을 손금불산입하고 0.9~1.2%의 저율과세 적용

[표 8] 일반법인과 조합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체계 비교

구 분		일반법인	조합법인
적용대상		일반법인	농업협동조합, 수산업협동조합, 신용협동조합, 새마을금고, 중소기업협동조합, 산림조합, 염연초생산협동조합, 소비자생활협동조합
과세표준		당기순이익 + 익금산입, 손금불산입 - 손금산입, 익금불산입 =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이월결손금 - 비과세소득 - 소득공제 = 과세표준	당기순이익 + 손금불산입(기부금 등 8개 항목 1)) = 과세표준
과표 구간별 세율	2억원 이하	0.9%	0.9%
	2~20억원	1.9%	
	20~200억원		1.2%
	200~3,000억원	2.1%	
	3,000억원 초과	2.4%	

주: 1) 기부금, 접대비, 대손금, 대손충당금, 과다경비, 업무무관비용, 지급이자, 퇴직급여충당금을 포함

□ (감면실적) 조합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에 따른 감면실적은 2020년 327.1억원 수준에서 2023년 511.3억원으로 증가한 후, 2024년 328.9억원 수준

- 조합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에 따른 감면실적은 「조세지출예산서」상 조합법인의 법인세 과세특례 감면실적에 10%를 적용하여 산정
- 2024년 특례실적 감소는 법인실적의 부진 외에도 2022년 세법개정에 따른 일반법인에 대한 세율 인하가 2023년 귀속소득부터 반영된 결과

[표 9] 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른 감면실적: 2020~2024년, 지방소득세
(단위: 억원)

구 분	2020	2021	2022	2023	2024
감면실적	327.1	334.7	423.0	511.3	317.3

자료: 정부, 「조세지출예산서」, 각 년도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(2) 추계방법

- 개정안의 세수효과는 우선 2020~2023년간 조합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특례실적을 조정한 후, 2020~2024년간 조정실적의 증가추세를 반영하여 향후 세수효과 추정
 - 2024년 법인세 신고자료 기준으로 산정한 과표구간별 조합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특례에 따른 감면실적은 다음과 같음

[표 10] 조합법인의 과표구간별 과세표준, 세율 및 산출세액: 2024년 신고기준

과표구간별	법인수 (개)	과세표준 (억원)	과세특례 적용		과세특례 미적용		세수효과 (A-B)
			세율 (%)	산출세액 (A, 억원)	세율 ¹⁾ (%)	산출세액 (B, 억원)	
합 계	3,172	41,728	-	423.6	-	740.9	-317.3
2억원 이하	855	615	0.9	5.7	1.0	5.5	0.2
2~20억원	1,801	15,092		136.1	2.0	250.7	-114.6
20~200억원	511	24,745	1.2	266.9		459.9	-193.0
200~3,000억원	5	1,276		15.0	2.2	24.7	-9.7

자료: 국세청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2024년 과표구간별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일반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율 인하에 따른 특례실적을 조정
 - 2024년 자료를 바탕으로 법인지방소득세 과표구간별 1인당 과세표준을 통해 세법개정 전후 일반법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특례 미적용시 산출세액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음

[표 11] 2022년 세법개정 효과에 따른 특례 미적용시 산출세액 조정내역: 2024년 신고기준

과표구간별	법인수 (A,개)	과세표준 (B,억원)	1인당 과세표준 (C=B/A, 억원)	특례 미적용시					
				'22년 세법개정 효과 조정전			'22년 세법개정 효과 조정후		
				세율 (D,%)	산출세액		세율 (D',%)	산출세액	
					1인당 (E=C× D,억원)	전체 (F=E× B,억원)		1인당 (E'=C× D',억원)	전체 (F'=E'× B,억원)
합 계	3,172	41,728	—	—	—	1198.8	—	—	1,115.4
2억원 이하	855	615	0.7	1.0	0.01	6.2	0.9	0.01	5.5
2~20억원	1,801	15,092	8.4	2.0	0.3	590.0	1.9	0.3	542.5
20~200억원	511	24,745	48.4		1.1	576.7		1.1	542.7
200~3,000억원	5	1,276	255.2	2.2	5.2	26.0	2.1	4.9	24.7

자료: 국세청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— 이를 바탕으로 특례실적을 조정할 경우, 2024년 기준 10.8%의 실적이 하향 조정

[표 12] 조합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감면실적 조정: 2024년 신고기준

(단위: 억원, %)

구 분	특례적용시 산출세액(A)	특례 미적용시				실적조정률 ([C-E]/C)
		'22년 세법개정 효과 조정전		'22년 세법개정 효과 조정후		
		산출세액(B)	특례실적 (C=A-B)	산출세액(D)	특례실적 (E=A-D)	
산출세액	423.6	1198.8	691.8	1,115.4	775.1	-10.8

자료: 국세청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— 2024년 기준으로 2020~2023년간 감면실적을 조정하여 살펴보면, 최근 5년간 특례
실적은 연평균 2.1% 증가함

[표 13] 조합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감면실적 조정: 2020~2024년

(단위: 억원, %)

구 분		2020	2021	2022	2023	2024	연평균 증가율 (‘20~’24)
특례 실적	조정전(A)	327.1	334.7	423.0	511.3	317.3	—
	조정후 (A×[1-10.8%])	291.9	298.7	377.5	456.3	317.3 ¹⁾	2.1

주: 1) 2024년 실적은 세법개정이 적용된 2023년 귀속소득을 바탕으로 발생
자료: 정부, 「조세지출예산서」, 각 년도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향후 세수효과는 2024년 실적에 최근 5년 연평균 감면실적의 증가율(2.1%)을 반영하여 추계

(3) 추계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어업 및 농업 분야의 지방세특례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4년 연장할 경우, 지방세는 2027년 284.7억원, 2030년 303.1억원 등 2027년에서 2030년까지 4년간 총 1,175.3억원(연평균 293.8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14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2027~2030년, 법인지방소득세

(단위: 억원)

	2027	2028	2029	2030	누적	연평균
조합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(안 제167조)	-284.7	-290.7	-296.8	-303.1	-1,175.3	-293.8

IV. 부대의견

- 없음

V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이유섭	백경엽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유섭	02-6788-4838	useuplee@assembly.go.kr